

# 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2118호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1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3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5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기 타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23-095호 직인(인장) 등록 및 폐기 공고 ..... 13

회									
람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12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 3. 13.

##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22-0 -인천광역시 -18호 (2022.12.22.)	대한외국인지원센터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98번길 35 (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88, 3층 (만수동)	인구가족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97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 3. 17.

## 인천광역시장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23-0- 인천광역시 -5호	아리랑전통연희단	이윤구	인천광역시 길마로 11번길 6	o 전통예술 공연사업 및 기획	2023. 3. 16.	신규 등록

## 입법예고

##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5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협 및 거리환경 훼손에 따라,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 하는 경우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정당현수막은 지정게시대(단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은 제외)

-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표시기간,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이상, 두께는 1cm이상
- 사고 취약지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설치 금지

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를 적용

다. 시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가능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건축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민원동 401호 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찬무(☎ 032-440-4767, 모사전송 032-440-8681, 전자문서(turboloy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당 현수막) ① 정당이 영 제35조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민의 통행 안전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2.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표시기간,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이상, 두께는 1cm이상으로 한다.
3.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고 취약지역(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설치를 금지한다.

②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

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한다.

제22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2조의2(정당현수막)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관련 내용 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제12조의2(정당현수막)</u></p> <p>① <u>정당이 영 제35조의 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민의 통행 안전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계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u></li> <li>2. <u>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표시기간, 설치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이상, 두께는 1cm 이상으로 한다.</u></li> <li>3. <u>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고 취약지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등 기둥 등)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 설치를 금지</u></li> </ol>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③ (생략)

<신 설>

한다.

②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이외의 현수막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적용한다.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③(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구에 지원 할 수 있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8조(적용배제)</p> <p><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2(적용배제)</p>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해당사항 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사항 없음”</p>

## 참고2

## 적용배제 관련 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12.11. 시행)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22.12.11. 시행)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 가. 정당의 명칭
  - 나. 정당의 연락처
  -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기 타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23-095호

## 직인(인장)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내규 제21조에 따라 인천교통공사 직인 및 특수인장의 등록·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 인천교통공사 사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2023. 3. 27일자 조직개편
2. 등록인장 최초사용일: 2023. 3. 27.
3. 폐기인장 폐 기 일: 2023. 3. 27.
4. 인장명 및 인영

□ 등록

구분	인장명	인영	비고
직인	인천교통공사 역무사업소장의인		최초사용일 2023.3.27
	인천교통공사7호선 운영사업단장의인		
특수 인장	인천교통공사역무사업소 분임지출담당인		
	인천교통공사7호선운영사업단 분임지출담당인		

□ 폐기

구분	인장명	인영	비고
직인	인천교통공사1호선 역무사업소장의인		폐 기 일 2023.3.27
	인천교통공사2호선 역무사업소장의인		
	인천교통공사7호선 운영부문장의인		
특수 인장	인천교통공사1호선 역무사업소분임지출담당인		
	인천교통공사2호선 역무사업소분임지출담당인		
	인천교통공사7호선운영부문 분임지출담당인		